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0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한병도·김승원·김민철

오영환 • 이상헌 • 권칠승

유준병·김민석·정일영

허 영・박재호・박상혁

신영대 · 최종윤 의원

(14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및 국제화의 흐름에 맞추어 선도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도 해당 사무가 누락되어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인 기구를 설립 또는 유치하여 운영하 거나 국제행사 등을 유치함으로써 해당 도시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 이고 지방 차원의 외교활동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방 재정법에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등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국제 기구를 설립하거나 유치하여 운영 및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파견 또는 운영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제9조제2항7호 신설).
- 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2조의2 신설).
- 다.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2조의3 신설).
- 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2조의4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

제172조 다음의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를 "제11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로 하고, 제10장(제172조의 2부터 제172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국제교류·협력

제17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 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 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2조의3(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2조의4(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현 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 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 무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 <신 설> 제10장 국제교류·협력 <신 설> 제17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 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 · 협력, 통 상 ·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 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간 기 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 <신 설>

<신 설>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3조 ~ 제175조 (생 략)

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 비정 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2조의3(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 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공무원 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 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2조의4(해외사무소 설치・운 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 류 · 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단 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 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3조 ~ 제175조 (현행과 같

음)